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7.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22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7월 4일

제114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제정이유

- 구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실용적으로 접목하여 구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창안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그간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구 방침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구민창안을 장려하고 창안채택 시 시상 및 부상을 수여하는 등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는 용어의 정의와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안자의 자격을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양식으로 제안할 있도록 하여 제안자의 범위의 확대와 창안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함 (안 제6조, 안 제7조))
- 창안채택심사를 위하여 창안심의회와 실무심의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창안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공무원 제안 심의회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창안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안전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함 (안 제9조)

-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안 제12조)
-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
- 세부심사기준과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18조)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함 (안 제18조의제4항)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국민제안의 접수·처리)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지금까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 법률형식 측면에서 볼때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에 따른 적절한 입법 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및 조례안의 각 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충돌,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 참여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의 대상이 구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창안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훌륭한 창안이라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 외국에서라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규정이라 하겠음.
그러함에도 본 조례안의 제명이 "영등포구민 창안제도"로, 제1조, 제2조, 제8조 등에 구민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안의 의욕을 가진 영등포구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칫 오해를 불러 창안 제출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 또한 "실무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실무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때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 실정에 밝고 전문지식을 갖추어 적합하다고도 볼수 있으나, 제안자 또는 제안의 의욕을 가진 본들이 바라볼 때에는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자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창안의 채택, 등급 결정 등을 좀더 객관적 판단하기 위하여 구민창안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시 민간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제9조제2항 관련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0호
----------	------------

제출년월일 : 2005. 7. 4.

제 출 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창안의 채택, 등급 결정 등을 좀더 객관적 판단하기 위하여 구민창안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시 민간인 참여 기회를 확대

2.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한다

제9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참여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9조(구성)①생략</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u>심사대상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u>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제9조(구성)①제정안과 같음</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청안제도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구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실용적으로 접목하여 구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청안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그간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구 방침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구민청안을 장려하고 창안 채택 시 시상 및 부상을 수여하는 등 구민청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는 용어의 정의와 구민청안제도운영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2) 제안자의 자격을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양식으로 제안할 있도록 하여 제안자의 범위의 확대와 창안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함 (안 제6조, 안 제7조)
- 3) 창안채택심사를 위하여 창안심의회와 실무심의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창안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공무원 제안심의회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4) 창안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안전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함 (안 제9조)
- 5)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안 제12조)
- 6)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
- 7) 세부심사기준과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18조)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함 (안 제18조의제4항)
-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국민제안의 접수·처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5.2.3 ~ 2005. 2. 25)결과 : 내용별첨

라. 첨부서류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수정안) 1부.
-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원안) 1부.
- 4) 타 자치단체 창안제도운영조례 등.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민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창안의 종류) ①창안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창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추천창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세입 증대방안
5.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②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창안의 제출방법 등) ①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기관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제8조(구민창안심의회 설치) ①구청장에게 제출된 창안의 채택·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안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공무원 제안심의회를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심사대상제안안전과 관계되는 5급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심의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심의회는 구청장이 상정한 창안에 대하여 제5조 해당 여부와 심의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심의회는 기획재정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실무심의회는 기획예산과 구민창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사기준)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채택등급 등) 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상 시기)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2회 수여한다.

제18조(부상 등) ①제16조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실무심의회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출된 창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으로 본다.